

 국토교통부		보도설명자료		
		배포일시	2020. 5. 20(수) 총 2매	
담당 부서	물류시설정보과	담당자	• 과장 한성수, 사무관 임승규 · 박정곤 주무관 송승섭 · 권최남 • ☎ (044) 201-4007, 4009	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‘물류시설법’·‘화물자동차법’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

[물류시설법] 정비사업에 국가 또는 시도지사의 재정지원 근거 명문화
[화물자동차법] 공영차고지 등 재정지원 대상에 공공기관·지방공사 추가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.
- 먼저, 물류 교통·환경 정비사업에 국가 또는 시·도지사의 재정지원 근거를 명문화하는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< 물류 교통·환경 정비사업에 국가 또는 시·도지사의 재정지원 근거 명문화 >

- 현행 물류시설법은 물류시설이 과밀 집중된 지자체의 도로 유지보수, 환경 개선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.
- 이에, 정비지구에서 정비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*에 대하여 국가 또는 시·도지사의 재정지원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물류시설의 밀집으로 인한 교통혼잡, 환경악화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과 지자체에 재정지원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.

* 도로 등 기반시설의 신설·확장·유지보수, 방음·방진시설의 설치 등

- ☐ 다음으로, 공영차고지 등 재정지원 대상에 공공기관·지방공사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일부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< 재정지원 대상에 공공기관·지방공사 추가 >

- 공영차고지 설치권자에 대해 지자체 단독에서 공공기관·지방공사가 추가('18.4.17 법 개정)됨에 따라, 재정지원 대상의 경우도 공공기관·지방공사가 추가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였다.
 - 앞으로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한 공영차고지, 화물차 휴게소 건설 추진시 재정지원이 가능해져 화물차 휴게시설의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☐ 이번에 개정된 「물류시설법」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, 「화물자동차법」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.
- 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이번 개정을 통해 물류시설 밀집 지역에도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가 활성화되고,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이 촉진되면 화물차 통행,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임승규 사무관 (☎ 044-201-4007, 물류시설법)이나, 박정곤 사무관(☎ 044-201-4009, 화물자동차법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